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9. 3.(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8. 8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4. 8. 8

라. 상정일자 : 2014. 9. 3(제218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장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확대 조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개선하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민관협의회 구성 인원을 24명으로 확대(안 제22조제2항)
- 민관협의회 위원 구성 방법 개선(안 제22조제3항)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민의견 수렴 활동 및 주민참여예산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안 제28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민관협의회 구성인원을 확대 조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협의회 구성인원이 민·관 동수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24명 이내로 위원을 확대하고 해당 구성방법을 개선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 등의 소요비용 지원사항을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의회 활동 지원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명시 되어 있지 않았던 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무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차준택, 유일용, 신영은, 이영훈, 허준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5명 : 찬성 5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20명 이내로 하되” 를 “2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된다” 를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 분과별 소관 국장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해 2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2조(설치 및 구성) ①(생략)</p> <p>② <u>민관협의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민·관 동수로 구성한다.</u></p> <p>③ <u>민관협의회 의장은 시장과 위원회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된다.</u></p> <p>④(생략)</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생략)</p> <p>② <u>시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p>	<p>제22조(설치 및 구성) ①(현행과 같음)</p> <p>② ----- 24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p> <p>③ -----, 당연직 위원은 시장, 기획관리실장, 분과별 소관 국장과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분과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위원장이 지역, 성별,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해 2명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p> <p>④(현행과 같음)</p> <p>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